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022.10.15.)를 계기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9154호, 2023. 1. 3. 공포, 7. 4. 시행)됨에 따라,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 설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절차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지정기준 설정(안 제37조 제1항 개정)

전산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보호조치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의 요건 설정

나.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 주기,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39조 신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점검주기를 명시하고, 보호조치 이행점검 및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다.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고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40조 신설)

재난·재해 및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서비스가 일정 시간 이상 중단 시, 해당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절차 및 방법 규정

라.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배타적으로 임차 이용하는 사업자의 조치사항
규정(안 제41조 신설)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내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보호조치 이행 및 임대사업자 협의 등 조치사항 규정

마.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의 위임 및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안 제42조 신설 및 제70조 개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관련 업무의 위임 및 전문
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

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별표9 개정)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점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자료제출 및 서비스 중단 보고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합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가”를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 산실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제38조제1항 중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를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계획을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이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행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전기 및 소방 분야 등의 관련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30분 이상인 경우
2.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45분 이상인 경우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단 발생의 일시·장소
2. 중단의 원인 및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중단 대응 및 복구 시 필요한 사항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수시로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이용 사업자의 조치의무)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전기·소방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임차시설에 대해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출입 통제를 실시하여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중 직접 설치·운영하는 설비 또는 출입 통제되는 임차시설에 위치한 설비(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설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보호조치의 이행
2.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 시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와의 협의
3. 직접 설치·운영하는 설비 또는 출입 통제되는 임차시설과 관련된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보고 및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 대한 통지. 이 경우, 보고 절차 및 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2조(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관련 전문기관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의 기술적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제2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6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점검 및 시정명령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4 및 제3항제4호의2(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별표 9 제2호하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수목까지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하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4	750	1,500	3,000
거.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	300	600	1,000
너. 법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	300	600	1,000

별표 9 제2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5	3,000	3,000	3,0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신 설>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② ----- 따른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 ----- ----- -----

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보험가입)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 개시와 동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③ -----

제2항-----

-----.

<삭제>

제38조(보험가입)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의 보호조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실시

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이행점검계획을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이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계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행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

<신 설>

우에는 정보통신, 전기 및 소방 분야 등의 관련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30분 이상인 경우

2.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단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해당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서 그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45분 이상인 경우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단 발생의 일시·장소

<신 설>

2. 중단의 원인 및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중단 대응 및 복구
시 필요한 사항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
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
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
지 수시로 법 제46조제6항에 따
른 보고를 문서(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이
용 사업자의 조치의무) 법 제46
조제7항에 따라 전기·소방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임차시설에 대
해 타인의 출입을 완전히 배제
하는 출입 통제를 실시하여 임
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
치 중 직접 설치·운영하는 설
비 또는 출입 통제되는 임차
시설에 위치한 설비(시설을

<신 설>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설비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보호조치의 이행

2.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 시 시설을 임
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
자와의 협의

3. 직접 설치·운영하는 설비 또
는 출입 통제되는 임차시설과
관련된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
으로 인하여, 해당 집적된 정
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서비스
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 대한 보고 및 시설
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 대한 통지. 이 경우,
보고 절차 및 방법은 제40조
를 준용한다.

제42조(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
치 관련 전문기관 지정) ①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
46조제8항에 따라 법 제46조제3
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
부 점검의 기술적 지원 및 제6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 ~ 9. (생략)

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1의2. 법 제46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점검 및 시정명령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 9.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 ④ (생 략)	10.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4 및 제3항제4호의2(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6771